「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7월 15일

나. 발의자: 이정희, 김원섭, 김재우, 김정도, 김춘남,

추은희 의원(6인)

다. 회부일자: 2024년 7월 16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7월 24일

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이 정 희 의원

나. 제안이유

고상주차장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택가의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O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보조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)
- O 보조금액에 관한 사항(안 제21조)

라. 참고사항

- O 관계법령
 - 「주차장법」 제21조
 -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 주택가의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활성화하고 노상주차장 설치 규정의 완화를 위해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O 검토 결과.

•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(안 제11조제4항)에 대해 규정하고, 최근 자재비 인상에 따른 내집 주차장 갖기 시업)의 보조금 한도의 상향으로 사업의 활성화와 거주지 내 주차공간의 확보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¹⁾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: 기존 주택의 담장, 대문 등의 철거로 집안주차장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

- 다만, 2017~2023년 동안 사업 신청 건수가 없는 등 사업의 참여율이 낮았으므로, 집행부서에서는 사업의 철저한 홍보와 절차 안내 등으로 사업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5. 토 론 요 지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: <u>원안가결</u>